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729

2018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 지적장애아동 교육실태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 소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 지적장애아동 교육실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Education of School-Aged Children Placed at Residential Institution for Intellectual Disability.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 소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 지적장애아동 교육실태 조사연구

지도교수 김 정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 소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소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 목차 ····· vii
ABSTRACT ····· x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용어의 정리 ····· 3

Ⅱ. 이론적 배경 ····· 5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구성요소 ····· 5
2.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 10
3. 장애인생활시설 교육지원 체제 ····· 11

Ⅲ. 연구 방법 ····· 14
1. 연구 참여자 ····· 14
2. 연구 도구 ····· 15
3. 연구 절차 ····· 17
4. 자료 처리 ····· 18

Ⅳ. 연구 결과 ····· 19
1. 시설 내 교육지원의 일반적 현황 ····· 19
2. 시설 내 교육지원정도 ····· 29
3. 시설 내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 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논의 ····· 39
1. 시설 내 교육지원의 일반적 현황 ····· 39
2. 시설 내 교육 지원정도 ····· 41
3. 시설 내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 41

Ⅵ. 결론 및 제언 ····· 44
1. 결론 ····· 44
2. 제언 ····· 45

참고문헌 ····· 48
부록 ····· 5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Ⅱ-1> 생활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 8
<표 Ⅱ-2> 시설 유형별 인원과 시설 수 ····· 11
<표 Ⅲ-1> 시설의 경영주체 ····· 14
<표 Ⅲ-2> 근무자들의 특성 ····· 15
<표 Ⅲ-3> 질문지의 문항 구성 ····· 16
<표 Ⅲ-4> 교육지원 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16
<표 Ⅳ-1>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 ····· 19
<표 Ⅳ-2> 지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 ····· 20
<표 Ⅳ-3>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도의 여부 ····· 21
<표 Ⅳ-4>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목적 ····· 21
<표 Ⅳ-5>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방법 ····· 22
<표 Ⅳ-6>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 23
<표 Ⅳ-7>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당 운영 횟수 ····· 23
<표 Ⅳ-8>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운영시간 ····· 24
<표 Ⅳ-9>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형태 ····· 24
<표 Ⅳ-10>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 ····· 25
<표 Ⅳ-11>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 ····· 26
<표 Ⅳ-12>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 ····· 26
<표 Ⅳ-13>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지원 형태 ····· 27
<표 Ⅳ-14> 시설 내 교육 담당자의 유무 ····· 28
<표 Ⅳ-15> 전체교육 담당자 자격증 유무 ····· 28
<표 Ⅳ-16> 시설 내 교육 담당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유형 ····· 29
<표 Ⅳ-17> 교육지원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 30
<표 Ⅳ-18> 경영주체에 따른 교육지원 만족도의 차이 ····· 30
<표 Ⅳ-19> 교육과 관련된 지적장애아에 대한 전반적인 큰 문제 ····· 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0>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 ····· 33
<표 Ⅳ-21>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 ····· 33
<표 Ⅳ-22>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형태 ····· 34
<표 Ⅳ-23>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 ····· 35
<표 Ⅳ-24>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 ····· 36
<표 Ⅳ-25>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37
<표 Ⅳ-26> 지적장애 대상들의 교육지원 위해 교육비 외의 필요한 지원 ····· 3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 지적장애아동의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생활시설에 지적장애 대상자를 위한 교육현황(프로그램의 유무 및 구성, 교육배치, 교사유무·자격, 교육재정, 교육시설의 지원체계)을 알아보고, 생활시설 내 교육지원(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교육지원의 여건, 프로그램 지원) 정도와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장애아동 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설문조사는 광주, 전남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40곳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1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17년 8월 1일 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138부이며 응답 누락으로 분석할 수 없는 2부를 제외하고 최종 136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경영주체에 대한 교육지원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으로, 사후검증은 LSD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시설의 지적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장애의 중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교육프로그램은 외부기관 연계로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주 영역은 사회적응 훈련으로 소그룹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교육전문가로서의 담당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시설에서의 교육지원의 한계가 나타났고, 향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시설의 교육 지원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과 교육지원의 여건, 프로그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원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시설 근무자들은 자신의 직무, 업무 관련 교육, 교육지원 여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비, 기자재 등 교육지원은 낮게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교육 지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시설 내의 전반적인 교육지원 문제는 지적장애아동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것이며,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적장애아동들에게는 지적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지원은 성인기까지의 바우처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지적장애아동들의 교육의 최종 목표인 정상화를 위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이 개발되어야 하며, 추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교육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황과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Education of School-Aged Children Placed at Residential Institution for Intellectual Disability.

by So-Young Yoo
Advisor : Jeong-youn Kim,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ag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used to develop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doing this,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as follows. First, what educational condition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which school ag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se is like. To do this, educational condition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se things: whether the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operated, the constitu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if there is the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ducational deployment, whether teachers of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are qualified, educational finance,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educational facilities. Second, to what extent educational supports such as the perception of the staff on edu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ducational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educational program are implemented. Third, what educational difficulties and demands a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was verified by one specialist in this field.

162 staff working in 40 welfare facilities where the disabled needed the secondary education in Gwangju and Jeonam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 2017 to September 11, 2017. 13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136 of them except for incomplete 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SPSS 18.0 was used to analyze collected data. Description analysis,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support for the welfare facility, and LSD for post-hoc were utili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ving in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were educated at the special-educational school. In case of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y were not educated. Educational programs of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are operated linked to external agency. These programs primarily focusing on training social adjustment were conducted at a small scale. However, there is a limit that social welfare workers, not educational experts are in charge of education. Therefore, fostering educational experts for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within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are necessary, hereafter.

Second,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the staff as for educational support for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the conditions of educational support, support for the program, overall all these factors were high. Plu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duty of the staff, education related to the task, the conditions of educational support, and programs was high. On the contrary, educational supports such as specialists in vocational training, materials and equipments, and operating cost were low, which needs to be aggressively improved.

Third, major problem of educational support in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d was that programs did not consider characteristics of childre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oblems caused by a lack of educators emerged most remarkably. Thus, education that is fit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policy to promote these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Educational supports as a voucher until being an adult need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In other words, vocational training fit for each individual should be developed so that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ecome normal,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top of this, the institutional plan that education helps to get a job needs to be set up.

This study with the purpose of researching educational conditions of children who hav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support in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disable and requirements of educational support.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educational support considering trait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also administrative support and fostering experts for educational support are necessar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계문명이 눈에 띄게 발전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수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주변의 환경적 요인으로 부터 악영향을 받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장애의 원인은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의무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를 살펴보면, 2011년(2,683,477명)과 비교하여 2014년(2,726,910명)의 장애인의 수가 약 1.62%(43,433명)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다른 장애의 수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6).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아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의 조기발견, 차별의 금지, 교육지원,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을 명시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 책임 및 청소년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이란 비전으로 4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분야, 11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김기수 외, 2015). 이와 같이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다.

학령기의 장애아동들에게는 각 개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수에 비해 기관이 넉넉하지 않아 시설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연구원, 2016).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을 제공한다. 장애인생활시설은 환경적 요인을 수정, 보완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고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학령기아동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중에서 교육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사람은 누구든지 교육을 통하여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환경조성이나 인식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으며, 많은 경험과 발전을 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발달과정에서의 조기의 교육지원은 잠재가능성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창원, 2016).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복지 중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제공받고 있는 교육지원의 양적, 질적 차원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아동들의 전반적인 교육 현황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근무자들의 지원정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현황(구옥종, 2005)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문헌연구를 통한 통합교육의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생활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아동의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령기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생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장애아동이 받고 있는 교육유형, 교육내용 등의 교육현황과 지원체계 정도에 대해 알아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령기 지적장애아동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현황(프로그램의 유무 및 구성, 교육배치, 교사 유무·자격, 교육재정, 교육시설의 지원체계)은 어떠한가?

둘째,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교육지원(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교육지원의 여건, 프로그램)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지적장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교육지원의 어려움은 어떠하며, 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적 요구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이 조사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장애인생활시설은 양성순(2012)의 연구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를 바탕으로,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0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준비를 하거나 장애의 원인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을 말하는 것으로 즉, 일상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의 보호와 양육으로 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나 요양 및 다양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의 생활 등을 보조, 협력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적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0조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이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며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적장애인이란 발달장애나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신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힘들게 되어 자신의 일을 처리능력이나 사회적응 능력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러한 장애는 18세 이전에 발생되고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서·사회적·생리적인 욕구를 갖고 있지만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사회 적응력이 부족하다(이재령,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장애인생활시설은 돌보기 힘든 장애인의 가정을 대신해 주는 장소로,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정서적인 안정을 주며, 전인격적인 인성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 협력 해줌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목적 하에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이루어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재정운영, 인력자원, 물리적 시설환경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김통원, 1998).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은 같은 장애유형이나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하거나 통원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재활이나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과 주거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유형별로는 지체·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생활시설로 세분화된다. 둘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장애정도가 너무 심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기에 상담이나 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영유아들이 입소나 통원하게 하여 보호와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교육부, 2014).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 관리와 운영, 시설운영의 배분과 활용,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등은 시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이나, 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자, 종사자, 재정, 지원체계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시설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들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이 각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인생활시설의 구성요소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 및 설치, 시설규모나 입지 조건, 입소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유형과 종사자의 수, 자격요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 지원 감독과 의무 등에 관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다(서혜숙, 2000). 장애인생활시설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시설, 시설사용자, 생활시설 종사자, 재정, 지원체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생활 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유형, 연령, 장애등급에 따라 배정하고 설치된다. 시설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들을 동원해야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지체,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연령에 따라 취학 전과 중, 고등학교, 성인으로 나누어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은 대상에 따라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하는 데, 장애인의 청각·의사소통 장애인의 시설은 1인당 21.78m², 시각장애의 경우는 19.8m², 지적장애나 지체장애의 경우는 21.12m²을 지켜야 하고, 중증 장애 및 영유아장애의 생활시설은 인당 18.48m²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도, 중증도, 중증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차이점에 따라 일상생활의 가능 유무를 판단하여 도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야 한다(김진호, 한태윤, 1997).

장애인 생활 시설은 입지조건과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입지는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 환경요건이 조성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시설의 규모는 소규모 시설과 항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면 항시 십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은 장애의 연령과 정도에 따라 배려하여 설비되어야 한다.

(2) 시설과 사용자

입소자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수용과 보호를 받아 생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격조건은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규정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 시켜 입소해야 한다. 그리고 설비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설정원의 30%이내에서 입소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0).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한다. 장애인들 중 지적장애인은 대한 지적 기능성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특수교육법, 2008). 장애인 복지법(2012)에서는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지적장애는 평균 이하의 지적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결함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18세 이전에 나타날 때 지적장애라고 한다.

이들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기관에서는 일반아들과 같이 접근해야 하며, 표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의 조절과 대안적 지원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에 기초하여 간헐적 지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을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생활시설 종사자

생활시설에 종사한 이들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 치료, 교육 등을 통하여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종사자로는 사무원, 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시설관리사, 영양사, 취사원, 세탁원 등이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입소하지 않고 생활하는 시설에는 지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로 의사, 간호사, 생활보조사, 재활교사, 영양사, 취사원, 세탁원 등이 있다. 종사자를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를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활동하는 전문 인력과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를 위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하는 관리 인력으로 구분한다. 전문 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요원, 언어치료사 등이 있고 관리 인력으로는 시설장, 총무, 사무원, 시설관리사 등이 있다(서혜숙, 2000)

<표 Ⅱ-1>생활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 있는 의사, 특수학교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자 및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근무한 자, 각 호에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 있는 자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장애인 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직업재활, 특수교육 전공·졸업한 자, 사회복지사, 장애인 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 관리 기사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자격증 소지자

출처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pp.76-77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위원을 살펴보면, 시설장, 총무, 의사는 1명씩 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하고,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는 따로 의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는 거주 장애인 50명당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생활보조사는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1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아동 및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이다. 다만,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할 인원보다 1.5 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사무원은 10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1인 이상, 재활교사는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있는 곳의 재활교사는 점자해독이 가능해야하며, 청각 의사소통장애인이 있는 곳에서는 수화통역이 가능해야 한다.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 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 시설관리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200명 이상일 경우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영양사는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취사원과 세탁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50인 이상인 경우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소하는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과 연령, 등급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게 맞게 장애인 보호시설에 배치하여 장애인이 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서혜숙, 2000). 또한 장애인 생활 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재활에 도움을 주어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 시설의 입소나 통원 등이 부적합한 목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며,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 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09).

(4) 재정 및 지원체계

장애인생활시설의 재정은 생활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시설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와 관리비, 인건비,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이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사용하며 시설의 운영자의 자부담으로도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의 재정 실정은 생활시설의 운영 수나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함을 벗어나려면, 가능하고 다양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장애인들의 서비스에 관련된 지원이다. 시설운영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운영한다. 인건비는 시설장이 본인의 뜻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 정도에 따라 변경하므로 기준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운영비는 생활시설의 장애인 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 및 직업, 교육,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및 직원 교육 및 훈련비 등의 전반적인 것에 사용된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 49조에 의하면 운영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일정금액은 부담한다.

생활시설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과 지역사회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을 현실성 있게 전문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역시 국가 및 지방단체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지도, 감독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에 맞는 보호, 교육, 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담당 행정기관 공무원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생활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며, 행정지원과 관리감동을 위핸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건복지부(2016b)가 조사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수와 인원은 다음 <표 Ⅱ-2>와 같았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도에 397개소의 시설에 23,243명의 장애인이 있었으나, 장애시설의 유형마다 가감이 되어 2015년도에는 1,484개소에 31.222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2> 시설 유형별 인원과 시설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인원	23.243	24.395	25.345	30.640	31.152	31.406	31.222
	시설 수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지체장애 시설	인원	2.230	3.673	2.102	2.057	1.978	2.208	1668
	시설 수	38	40	39	40	39	44	39
시각장애 시설	인원	760	873	787	786	770	632	628
	시설 수	14	14	15	16	16	15	16
청각언어 장애시설	인원	519	386	361	335	320	270	255
	시설 수	11	10	9	8	8	7	7
지적장애 시설	인원	9.539	14.338	10.788	11.748	12.001	12.136	12.369
	시설 수	172	196	226	278	293	309	321
중증장애 시설	인원	9.728	4.813	10.798	11.006	11.412	11.344	11.314
	시설 수	153	182	191	201	216	223	233
영유아장 애시설	인원	467	312	509	510	473	466	541
	시설 수	9	10	10	10	9	9	10

자료: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p. 266

3. 장애인생활시설의 교육지원 체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교육유형은 의료재활과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이 있다(이종철, 2001). 재활이란 몸과 마음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장애의 요소를 없게 해 주거나 줄여주는 의료적이고 교육적이며 직업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회적인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의료재활은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요소들을 줄이고 잠재된 신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게 도와 일상적인 생활과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재활은 학습적인 환경의 장애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 맞는 각기 다른 조건을 갖추어 학습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직업재활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지원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재활에서 촉탁의료 방문 진료는 형식적 방문의 건강검진이고, 작업치료나 언어치료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의료재활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제한적이다. 교육재활의 경우 장애아가 일반학교에 취학한 비율도 낮아 통합교육의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의 교육재활의 경우 전문자격이 없는 재활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록 및 평가 등의 체계성도 부족하다. 직업재활은 재활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아의 직업 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가치관이 부족하며, 직업의 평가와 직업 전 훈련, 기능훈련 등의 체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측면에서 재활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아동들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이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재활교사들의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전문 인원과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으로,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잘 조사하여 내부인력 동원과 전문 인력 활용 등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은 학습적인 환경면에서 장애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 학습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수교육재활은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진흥법에 따라 학령기의 의무교육과 중등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별 특수학교의 수는 지적장애가 43개, 청각 16개, 시각 11개 학교로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가장 많다. 교육부(2016)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87,950명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2015년보다 117명이 감소하였고,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확대 및 지원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교육, 생활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구원옥(2004)은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적응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 해야 하며, 교육전문가와 생활재활 교사, 의료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교육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기혁(2002)은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재활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진로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기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자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자립성을 키워 현실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기, 적성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영희(2015)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외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진행 시 발생하는 업무과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와 근무여건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명호(2001)는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주간보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의 확충과 시설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수학교 졸업 이후 계속 교육과 다양한 개인, 능력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윤원일(2002)은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교육적 접근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치료 방법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욕구는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정신지체장애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물리치료, 언어치료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보건복지부의 2016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의하면 2015년 12월 기준 광주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66개, 대상자는 975명이며, 종사자는 575명이며, 전남의 광주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47개, 대상자는 1,273명이며, 종사자는 603명이다(보건복지부, 2016a).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을 포함하여 생활재활과 교육을 담당하는 광주 27개, 전남 13개 합 40개(3.53%)에서 근무하는 162명(8.77%)을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총 138명에게서 질문지를 회수했는데 이 중에서 응답 누락으로 분석할 수 없는 2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부(회수율 85.19%)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시설의 경영주체와 근무자들의 특성은 <표 Ⅲ-1>, <표 Ⅲ-2>과 같다.

<표 Ⅲ-1> 시설의 경영주체

N=40

구분	N(%)
(사회복지, 재단)법인	19(47.5)
개인	11(27.5)
종교단체	10(25.0)
전체	40(1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Ⅲ-2> 근무자들의 특성

N=136

항목	구분	N(%)
성별	남	28(20.6)
	여	108(79.4)
지역	광주	96(70.6)
	전남	40(29.4)
근무경력	5년 미만	52(38.3)
	5-10년 미만	38(27.9)
	10년 이상	46(33.8)
연령	30세 미만	17(12.5)
	30세-40세 미만	29(21.3)
	40세-50세 미만	51(37.5)
	50세 이상	39(28.7)
직위	시설장	9(6.6)
	사무국장	8(5.9)
	사회복지사	30(22.2)
	생활재활교사	77(56.6)
	교육담당교사	1(0.7)
	치료지원담당자	4(2.9)
	기타	7(5.1)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는 전국의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학령기 장애아동 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질문지로 강성종(1999), 배현정(1992), 백은희(1999), 이덕순(1997), 송미령(2001), 조흥식(1998), 신종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성종(1999)의 재택·순회교육에 관련한 질문내용을, 배현정(1992)의 수용현황, 교육 현황에 관한 부분을, 백은희(1999)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에 관한 부분을, 이덕순(1997), 송미령(2001)의 교육 배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의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조흥식(1998)의 질문지 구성 양식을, 신종화(2003)의 교육면에 관련된 질문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이 분야의 전문가 1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질문지의 문항 구성

질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시설 내 교육 현황 (프로그램의 유무 및 구성, 교육배치, 교사유무·자격, 교육재정, 교육시설의 지원체계)	1~16	16
시설 내 교육지원 정도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교육지원의 여건, 프로그램 지원정도)	17~28	12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29~37	9
계		37

시설 내 교육지원 정도에 대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아니다' 2 점 점차적으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반응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위변인별로 신뢰도 계수(Cronbach'ɑ)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4> 교육지원 정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ɑ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2	17, 18	.87
교육지원의 여건	5	19, 20, 21, 22, 23	.85
프로그램 지원정도	5	24, 25, 26, 27, 28	.84
전체	12		.90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은 .87, 교육지원의 여건은 .85, 프로그램 지원정도는 .84, 교육지원 정도 척도의 전체는 .90으로 나타났고,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12개 문항의 각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ɑ)는 <표 Ⅲ-4>와 같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광주광역시· 전남지역의 장애인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되신 근무자들에게 질문지의 문제점과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직 경력이 있는 6명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예비조사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나 이해하기 힘든 문항,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추가되고자 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재구성 된 설문지를 10년 미만 근무자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로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11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질문지 배부 전에, 미리 광주· 전남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지를 확인한 40개의 생활시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 등을 소개하고 기관장이나 생활지도 담당하신 분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신 봉투에 질문지와 감사의 메모, 치약·칫솔세트와 색 볼펜을 동봉하여 방문 가능한 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짜를 맞추어서 하루에 한, 두 군데 많게는 세 군데를 방문하였다. 전체 162부를 발송하였고, 방문한 시설마다 회수 날짜를 확인했고, 방문 하루 전에 전화하여 시간을 잡고 질문지 되었는지 확인한 후, 재방문해서 자료를 회수하였다. 질문지에 답이 안 된 것은 다시 설명 드려 회수하였고, 설문 작성 하신 분이 안 계셨을 때에는 다시 방문해서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회수는 총 162부 가운데 13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응답 누락으로 분석할 수 없는 2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6명의 생활시설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일반적인 시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그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학령기 장애아동의 시설 내 교육 현황, 교육지원 정도 등을 문항별 빈도와 그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에 관한 문항 중에 자율적으로 기술하는 문항은 중요한 핵심을 간추려 주요한 견해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주체에 따른 종사자들이 각 기관에 따라 교육지원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인인 경영주체가 3집단 이상이므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LSD방법을 이용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라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들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생활시설 40개에서 시설장,사무국장,사무원,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교육담당교사,치료지원담당자 (작업, 음악, 심리, 언어치료사 등)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에 대한 현황, 교육지원 정도,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시설 내 교육지원의 일반적 현황

장애인생활시설의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관련서비스 중 프로그램의 유무 및 구성, 교육배치, 교사유무·자격, 교육재정, 교육시설의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배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 (다중응답)

N=40

구분	N(%)	케이스퍼센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수학교	31(39.2)	77.5
일반학교	8(10.1)	20.0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19.0)	37.5
시설 내 특수학습(파견학급)	12(15.2)	30.0
재택 순회 교육	4(5.1)	10.0
시설 내 자체 프로그램	9(11.4)	22.5
합계	79(100)	197.5

<표 Ⅳ-1> 에 따르면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배치는 특수학교(39.2%),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19.0%), 시설 내 특수학습(파견학급)(15.2%), 시설 내 자체 프로그램(11.4%), 일반학교(10.1%), 재택 순회교육(5.1%) 순으로 나타났다.

2)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

시설에서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지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 (다중응답)

n=23

구분		N(%)	케이스퍼센트(%)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 (다중응답)	중증 장애로 인하여(장애정도가 심하여)	22(44.9)	95.7
	교육 프로그램 미비	6(12.2)	26.1
	시설의 지원인력 부족	6(12.2)	26.1
	교육 예산 부족	10(20.4)	43.5
	기타	5(10.2)	21.7
	계	49(100)	2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에서 지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증장애(44.9%), 교육 예산 부족(20.4%), 교육 프로그램 미비와 시설의 지원인력 부족(12.2%), 기타 요인(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도의 여부

결혼 유무별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표 Ⅳ-5> 와 같다.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도의 여부

구분		N(%)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연중3개 이상)	24(60.0)
	정기적으로 운영 된다.(연중1~2개)	13(32.5)
	비정기적이지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1(2.5)
	매우 드물게 운영 된다	1(2.5)
	기타	1(2.5)
	계	40(100)

<표 Ⅳ-3>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도의 여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연중3개 이상)'이 60.0%, '정기적으로 운영 된다.(연중1~2개)'가 32.5%, '비정기적이지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와 '매우 드물게 운영 된다'와 '기타'는 동일하게 (2.5%)로 나타났다.

4)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목적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목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N(%)
시설 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	근무자의 교육적 중요성 인식	1(2.5)
	장애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8(20.0)
	시설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0(0)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31(77.5)
	계	40(100)

<표 Ⅳ-4>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77.5%), 장애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20.0%), 근무자의 교육적 중요성 인식(2.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법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방법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시설 자체 개발 프로그램	11(27.5)
	타 기관 프로그램 도입	1(2.5)
	강사 섭외	12(30.0)
	외부기관 연계	16(40.0)
	계	40(100)

<표 Ⅳ-5>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방법은 외부기관 연계(40.0%), 강사 섭외(30.0%), 시설 자체 개발 프로그램 (27.5%) 타기관 프로그램 도입 (2.5%) 순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영역	교과활동	1(2.5)
	일상생활 훈련	13(32.5)
	치료 활동	7(17.5)
	사회적응훈련	14(35.0)
	여가, 취미, 오락	5(12.5)
	계	40(100)

<표 Ⅳ-6>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사회적응훈련 (35.0%), 일상생활 훈련 (32.5%), 치료 활동 (17.5%), 여가, 취미, 오락 (12.5%), 교과활동 (2.5%) 순으로 나타났다.

7)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당 운영 횟수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당 횟수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당 운영 횟수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육 프로그램의 평균 주당 횟수	1회	5(12.5)
	2회	16(40.0)
	3회	6(15.0)
	4회 이상	13(32.5)
	계	40(1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7>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당 횟수로 2회(40.0%), 4회 이상(32.5%), 3회(15.0%), 1회(12.5%) 순으로 나타났다.

8)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운영시간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운영시간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운영시간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시간	30분미만	3(7.5)
	30~60분 이내	34(85.0)
	60~90분 이내	3(7.5)
	계	40(100)

<표 Ⅳ-8>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운영시간으로 30~60분 이내가 85.0%로 가장 많았고, 60~90분 이내와 30분미만은 동일하게 7.5%로 나타났다.

9)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형태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형태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형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형태	1:1의 개별지도	7(17.5)
	5명 미만의 소그룹	18(45)
	10명 미만의 그룹	11(27.5)
	10명 이상의 그룹	4(10.0)
	계	40(100)

<표 Ⅳ-9>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형태로 5명 미만의 소그룹(45%), 10명 미만의 그룹(27.5%), 1:1의 개별지도(17.5%), 10명 이상의 그룹(10.0%) 순으로 나타났다.

10)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	외부 강사 전문성 평가	4(10.0)
	참여자 만족도 조사	29(72.5)
	기관 내 실무자 평가	5(12.5)
	평가하지 않음	2(5.0)
	계	40(100)

<표 Ⅳ-10>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으로 참여자 만족도 조사(72.5%), 기관 내 실무자 평가(12.5%), 외부 강사 전문성 평가(10.0%), 평가하지 않음(5.0%) 순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1)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	참여 장애인의 부담	3(7.5)
	국가 및 지방 자치 부담	15(37.5)
	생활시설 부담	4(10.0)
	국가, 지방자치 및 시설 공동 부담	11(27.5)
	장애인 국가, 지방 자치 및 생활시설 공동 부담	7(17.5)
	계	40(100)

<표 Ⅳ-11>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 부담(37.5%), 국가, 지방자치 및 시설 공동 부담(27.5%), 장애인 국가, 지방 자치 및 생활시설 공동 부담(17.5%), 생활시설 부담(10.0%), 참여 장애인의 부담(7.5) 순으로 나타났다.

12)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12>과 같다.

<표 Ⅳ-12>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	무료	18(45.0)
	10만원 미만	19(47.5)
	10~20만원 미만	3(7.5)
	계	40(100)

<표 Ⅳ-12>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으로 10만원 미만(47.5%), 무료(45.0%), 10~20만원 미만(7.5%) 순으로 나타났다.

13)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지원 형태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지원 형태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지원 형태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국가 지원 형태	개인 계좌에 현금 지원	2(5.0)
	교육시설 운영비로 지원	15(37.5)
	바우처 형태의 지원	13(32.5)
	공모 프로포절 개발 지원 사업	8(20.0)
	기타	2(5.0)
	계	40(100)

<표 Ⅳ-13>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지원 형태는 교육시설 운영비로 지원(37.5%), 바우처 형태의 지원(32.5%), 공모 프로포절 개발 지원 사업(20.0%), 순으로 나왔고, 개인 계좌에 현금 지원과 기타는 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4) 시설 내 교육 담당자의 유무

시설 내 교육 담당자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14>, <표 Ⅳ-15>와 같다.

<표 Ⅳ-14> 시설 내 교육 담당자의 유무

구분		N(%)
시설 내 교육 담당 자 유무	있다	32(80)
	없다	8(20)
	계	40(100)

<표 Ⅳ-14>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 담당자가 '있다'(80%), '없다'(20%)로 나타났다.

15) 시설 내 교육 담당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

시설 내 교육 담당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질문지에 응한 응답자 136명에 따른 전체 교육 담당자 자격증 유무의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전체교육 담당자 자격증 유무

구분		N(%)
전체교육 담당자 자격증 유무	있다	100(73.5)
	없다	36(26.5%)
	계	136(1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설 내 교육 담당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N=100)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소지한 자격증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시설 내 교육 담당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유형

구분		N(%)	케이스퍼센트 N=100
시설 내 교육담당 근무자의 자격증유형 (다중응답)	일반교사	4(2.6)	4.0%
	특수교사	8(5.3)	8.0%
	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등)	39(25.8)	39.0%
	사회 복지사	91(60.3)	91.0%
	자격증 없음	1(0.7)	1.0%
	기타	8(5.3)	8.0%
	계	151(100)	151%

<표 Ⅳ-16>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 담당 교사가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전체 100명 가운데 응답한 91.0%인 91명이 응답한 사회복지사였다. 다음으로 39.0%인 39명이 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등)라는 응답이 많았고, 특수교사와 기타요인 8%인 8명, 일반교사 4%인 4명, 자격증 없음 1.0%인 1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시설 내 교육지원 정도

1) 시설 내 교육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경향

지적장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지원의 여건과 프로그램 지원정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교육지원 정도의 일반적 경향

N=136

변인		M	SD
교육지원정도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4.08	.59
	교육지원의 여건	3.00	.65
	프로그램 지원정도	3.51	.55
	전체	3.37	.52

교육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교육 지원정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점까지였으며 전반적인 교육 지원정도에 대한 평균은 3.37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에 대한 지원정도의 평균은 4.08, 교육 지원의 여건에 대한 정도의 평균은 3.0,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도의 평균은 3.5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 지원정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2) 경영주체에 따른 교육 지원정도의 차이

경영주체에 따른 (사회복지, 재단)법인, 개인, 종교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각 기관에 따라 교육 지원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의 경영주체별 지원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경영주체에 따른 교육 지원정도의 차이

변인	구분	N	M(SD)	F	Post Hoc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사회복지,재단)법인	53	3.88(.60)	5.83**	a
	개인	43	4.22(.56)		b
	종교단체	40	4.21(.53)		b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육지원의 여건	(사회복지,재단)법인	53	2.84(.61)	.84	
	개인	43	3.05(.66)		
	종교단체	40	2.99(.71)		
프로그램 지원정도	(사회복지,재단)법인	53	3.40(.48)	1.15	
	개인	43	3.57(.55)		
	종교단체	40	3.51(.55)		
전체지원정도	(사회복지,재단)법인	53	3.23(.48)	2.53*	a
	개인	43	3.47(.54)		b
	종교단체	40	3.43(.52)		ab

**p<.01, *p<.05

경영주체에 따른 교육지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표 Ⅳ-18>에 의하면, 사후분석 a, b는 지원정도에 있어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ab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평균값 M을 보면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a<b로 표기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F=5.83, p<.01)과 전체 지원정도(F=2.53, p<.05)에서 경영주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 요인에서는 경영주체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요인의 경우 (사회복지, 재단)법인(M=3.88)보다 개인(M=4.22)과 종교단체(M=4.21)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교육지원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함을 보였다. 또한 전체지원정도에서는 (사회복지, 재단)법인이 개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2.53, P<.05). 이는 (사회복지, 재단)법인이 교육지원의 전체적인 지원정도가 가장 좋다는 결과이다.

3. 시설 내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장애인들의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근무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19>과 같다.

<표 Ⅳ-19> 교육과 관련된 지적장애아에 대한 전반적인 큰 문제점

N=136

구분		N(%)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지적장애학생의 교육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29(21.3)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교육기관 부재	79(58.1)
	전문 강사 초빙 어려움	15(11.0)
	부모, 친척들의 교육비 부담감	2(1.5)
	국가 ·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지원체제 미비	10(7.4)
	기타	1(0.7)
	계	136(100)

<표 Ⅳ-19>에 따르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교육기관 부재(58.1%), 지적장애학생의 교육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21.3%), 전문 강사 초빙 어려움(11.0%), 국가 ·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지원체제 미비(7.4%), 부모, 친척들의 교육비 부담감(1.5%), 기타(0.7%) 순으로 나타났다.

2)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 결과는 <표 Ⅳ-20>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0>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

N=136

구분		N(%)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	시설장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0(0.0)
	교사의 부족(보조 인력 포함)	58(42.6)
	통학 및 이동의 불편	24(17.6)
	교육 시설 및 교재 부족	20(14.7)
	교육 재정 (운영비) 부족	32(23.5)
	기타	2(1.5)
	계	136(100)

<표 Ⅳ-20>에 따르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의 부족(보조 인력 포함)(42.6%), 교육 재정 (운영비) 부족(23.5%), 통학 및 이동의 불편(17.6%), 교육 시설 및 교재 부족(14.7%), 기타(1.5%) 순으로 나타났다.

3)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136

구분		N(%)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	교과 활동	0(0.0)
	일상생활 훈련	40(29.4)
	치료 활동	24(17.6)
	직업 교육	18(13.2)
	사회 적응 훈련	45(33.1)
	여가, 취미, 오락	9(6.6)
	계	136(100)

<표 Ⅳ-21>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으로 사회 적응 훈련(33.1%), 일상생활 훈련(29.4%), 치료 활동(17.6%), 직업 교육(13.2%), 여가, 취미, 오락(6.6%)순으로 나타났다.

4)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형태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22>과 같다.

<표 Ⅳ-22>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형태

N=136

구분		N(%)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형태	지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5(40.4)
	다른 장애 유형과 함께 하는 교육	22(16.2)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육	33(24.3)
	부모(보호자 및 가족)와 함께 하는 교육	25(18.4)
	기타	1(0.7)
	계	136(100)

<표 Ⅳ-22>에 따르면,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형태로는 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40.4%),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육(24.3%), 부모(보호자 및 가족)와 함께 하는 교육(18.4%), 다른 장애 유형과 함께 하는 교육(16.2%), 기타(0.7) 순으로 나타났다.

5)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23>와 같다.

<표 Ⅳ-23>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

N=136

구분		N(%)	케이스퍼센트(%)
지적장애학생들이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 (다중응답)	지자체별 평생교육 및 주민 센터	70(25.7)	51.5%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15(5.5)	11.0%
	지역사회재활시설	107(39.3)	78.7%
	직업재활시설	72(26.5)	52.9%
	종교단체 및 기타	8(2.9)	5.9%
계		272(100)	200.0%

<표 Ⅳ-23>에 따르면,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로는 전체 136명 가운데, 78.7%인 107명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52.9%로 72명으로 직업재활시설이었고, 지자체별 평생교육 및 주민센터는 51.5%로 70명,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은 11.0%로 15명, 종교단체 및 기타는 5.9%로 8명 순으로 나타났다.

6)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24>과 같다.

<표 Ⅳ-24>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

N=136

구분		N(%)	케이스퍼센트(%)
프로그램 활성화에 중요한 점 (다중응답)	프로그램 관련 장애학생들의 욕구파악	57(21.0)	41.9%
	효율적인 운영 및 정확한 평가	34(12.5)	25.0%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1(7.7)	15.4%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58(21.3)	42.6%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참여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75(27.6)	55.1%
	전문 인력 확충	27(9.9)	19.9%
계		272(100)	200.0%

<표 Ⅳ-24>에 따르면,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참여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으로 전체 136명 중 55.1%인 75명이 응답한 것이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42.6%인 58명, 프로그램 관련 장애학생들의 욕구파악 41.9%인 57명 효율적인 운영 및 정확한 평가 25.0%인 34명, 전문 인력 확충 19.9%인 27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5.4%인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7)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25>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N=136

구분		N(%)	케이스퍼센트(%)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다중응답)	성인기까지 바우처 확대운영	63(23.2)	46.3%
	교육시설에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54(19.9)	39.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6(13.2)	26.5%
	정부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망 구축	48(17.6)	35.3%
	교육시설의 교육담당 전문인력 확보	45(16.5)	33.1%
	교육지원 예산 확보	25(9.2)	18.4%
	기타	1(0.4)	0.7%
계		272(100)	200.0%

<표 Ⅳ-25>에 따르면,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기까지 바우처 확대운영이 전체 136명 가운데 46.3%인 63명이 응답하여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시설에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39.7%인 54명, 정부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망 구축 35.3%인 48명, 교육시설의 교육담당 전문인력 확보 33.1%인 45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6.5%인 36명, 교육지원 예산 확보 18.4%인 25명, 기타 0.7%인 1명 순으로 나타났다.

8) 지적장애 대상들의 교육지원 위해 교육비 외의 필요한 지원

지적장애 대상들의 교육지원 위해 교육비 외의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Ⅳ-26>와 같다.

<표 Ⅳ-26> 지적장애 대상들의 교육지원 위해 교육비 외의 필요한 지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136

구분		N(%)	케이스퍼센트(%)
교육비 지원 외에 필요한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도	72(26.5)	52.9%
	치료 및 개인 상담지원	57(21.0)	41.9%
	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62(22.8)	45.6%
	교육장소 이동을 위한 교통지원	29(10.7)	21.3%
	근무자들의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교육 전문연수 지원	52(19.1)	38.2%
	기타	0	0
계		272(100)	200.0%

<표 Ⅳ-26>에 따르면,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비 외의 필요한 지원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지도가 전체 136명 가운데 52.9%인 72명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45.6%인 62명, 치료 및 개인 상담지원 41.9%인 57명, 근무자들의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교육 전문연수 지원 38.2%인 52명, 교육장소 이동을 위한 교통지원 21.3%인 29명 순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인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현황, 교육 지원정도,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주·전남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 40개의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136명에게 설문을 하였다. 회수한 설문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지원의 일반적 현황, 시설 내 교육 지원정도, 시설 내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빈도와 그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내 교육지원의 일반적 현황

생활시설의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활동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에는 특수학교(39.2%),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19.0%) 이용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배현정(1992)의 연구에서 장애아가 교육을 받는 기관은 주로 특수학교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지적장애아들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장애로 인하여 (44.9%)로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유로 교육예산 부족(20.4%)인 것을 보면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신종화(2003)의 연구에서 시설의 정신지체장애아동 중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87%가 중증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정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여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60.0%), 정기적 운영(32.5%)이 나타났다. 이는 신종화(2003)의 연구에서 86.3%가 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장애아 생활시설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77.5%)이 월등하게 높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20.0%) 이 그 다음이었다. 시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은 외부기관 연계(40.0%), 강사 섭외(30.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종화(2003)의 연구에서는 시설 내 교육 담당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인가시설과 비인가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려 되며, 시설의 장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자체적인 상황과 여건의 미비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사회적응 훈련(35.0%), 일상생활 훈련(32.5%)이 많았으며,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1회기 당 평균 운영시간으로 30~60분 이내 (85.0%)가 가장 높았다. 주요 운영 형태로 5명 미만의 소그룹(45%), 10명 미만의 그룹(27.5%)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화(2003)의 연구에서 인가시설의 교육내용은 사회적응 훈련에, 비인가 시설은 일상생활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소그룹으로 운영하며 회기당 약 1시간 정도 진행한다는 강성종(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평가 방법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72.5%)로 대부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방법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부담(37.5%), 국가, 지방자치 및 시설 공동 부담(27.5%)으로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의 도움으로 시설이 함께 부담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본인 부담금은 10만원 미만(47.5%)과 무료(45.0%)로 진행되고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지원 형태는 교육시설 운영비로 지원(37.5%), 바우처 형태의 지원(32.5%), 공모 프로포절 개발 지원 사업(20.0%)으로 진행되었다. 프로포절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얻어내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설 내에 교육 담당자가 '있다'(80%)는 결과는 시설의 교육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교육 담당 교사가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전체 100명 가운데 응답한 91.0%인 91명이 응답한 사회복지사였다. 다음으로 39.0%인 39명이 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등)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교육전문가로서의 담당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교육까지 대행하고 있다는 점이 시설의 교육적인 노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상을 위한 기관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시설 내 교육 지원정도

생활시설 근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정도를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과 교육지원의 여건,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정도를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전반적인 교육 지원정도에 대한 평균이 3.3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 지원에 대해 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순(2017)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 지원정도가 3.73로 나온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생활시설 근무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지원정도가 높으며, 업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지원, 교육의 지원 여건과 프로그램 지원정도 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지원에 대한 낮은 정도는 남철민(2005)의 연구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 이수여부가 96.4%가 받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즉 교육지원에 대한 낮은 정도는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비, 기자재 등 교육적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김수정, 2001).

3. 시설 내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활시설의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들을 분석한 결과는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교육기관 부재(58.1%)를 보았고, 지적장애 대상자의 교육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21.3%)도 적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의 부족(42.6%)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수경(2012)의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신종화(2003)의 연구에서 시설에서 교육에 대한 큰 어려움이 교육시설과 교재, 교사, 교육재정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아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 관련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충족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아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과 이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설 확충 및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의 여건에 대한 지원정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현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중점 교육내용면에서도 사회적응 훈련 (33.1%), 일상생활 훈련 (29.4%)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무자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강조한 교육내용 순서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형태로는 지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4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육(24.3%)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로 78.7%가 지역사회 재활 시설이라고 답해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55.1%가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참여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라 응답하였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은 42.6%, 프로그램 관련 장애학생들의 욕구 파악은 41.9%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 근무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형주(2008) 연구에서 자녀의 장애가 중증일수록 특수학교 졸업 이후 다닐만한 기관이 없어 부모들이 걱정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충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는 시설이 확충되어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46.3%가 성인기까지 바우처 확대운영이라 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시설에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의무화(39.7%)로 나타났다. 이는 박용동(2003)의 연구에서 정신지체 장애아동 부모는 장애자녀의 재활과 교육을 위해 여러 기관을 병행하여 다니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정부보조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임정훈(200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즉,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및 성인기까지의 바우처를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지원이 활성화 되리라 유추할 수 있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비 외의 필요한 지원으로는 직업교육 및 취업지도가 5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45.6%)으로 나타났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한얼(2012)의 연구에서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 중고용, 사회적 활동, 지역사회생활, 가정생활, 평생학습에서 지원요구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지적장애 대상자의 교육의 최종 목표인 정상화를 위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이 개발되어야 하며, 추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Ⅵ. 결론 및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 지적장애아동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로 연구결과 및 논의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시설의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가 주로 교육을 받는 곳은 특수학교이며, 지적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증장애이기 때문이었다. 교육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었으며, 시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외부기관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사회적응 훈련이었으며, 주요 운영 형태는 소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생활시설 근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정도를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과 교육지원의 여건과 프로그램 지원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근무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지원정도가 높으며, 업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의 여건과 프로그램 지원정도 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지원에 대한 낮은 점은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비, 기자재 등 교육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근무 시 느끼는 어려움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 요구에 대한 결과는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교육의 관련 문제이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기관의 부재였으며, 교육지원의 어려움으로는 교사의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중점 내용은 사회적은 훈련이 높았으며, 시설 내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형태는 지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높게 나타났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시설 외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는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 나타났으며,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참여도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라 하였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성인기까지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바우처 확대운영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비 외 필요 지원으로는 직업교육 및 취업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의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생활시설을 선정하다 보니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의 장애아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나이는 만 20세까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현장의 시설에는 교육을 받을 때이지만 장애의 여건이나 가정의 형편 등으로 20세가 넘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생활시설마다 있어 연령에 따른 요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령기 지적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아동의 교육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근무자 입장에서 본 교육지원의 현황과 실태의 측면, 교육지원의 만족도 측면,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측면으로 얻을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생활시설의 근무자 입장에서 본 교육지원의 현황과 실태의 측면으로는 대상자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담당 근무자가 있지만, 자체적인 지원과 능력이 부족하여 교육 담당자를 사회복지사가 하도록 하여 본인의 일 외에 교육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육만을 전담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좋아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외부기관과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이 주가 아닌 부가 되도록 하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한 특수학교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시설 내 특수학급이나 시설 내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적장애만을 위한 전문화 된 생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영유아 지적장애아들의 시설과 더 많은 요구가 있는 중증 지적장애 대상자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체계화된 생활시설에서 주거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비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표현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생활시설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과 여건과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본 측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나 인력, 인력의 전문성, 기자재, 운영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시설의 자부담 및 후원금 등의 조성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생활시설의 복지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력이나 후원금 등을 높이려면 먼저 장애인과 시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기에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연계성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서 시설의 기관장과 잘 의논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영주체에 따른 (사회복지, 재단)법인, 개인, 종교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각 기관에 따라 지원정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경우, (사회복지, 재단)법인보다 개인과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인식에 대한 교육지원 정도가 더 높게 인식됨이 나타났다. 이 점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구별 되어지는 부분으로, 개인과 종교 단체의 종사가가 본 시설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 점과 본 시설이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 재단)법인이 개인과 종교단체의 경영주체보다 뭐든지 월등하다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여겨지기에, (사회복지, 재단)법인 뿐 아니라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기관에도 공정하고도,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측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 부족이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그 외에도 재정적인 문제, 통학지원의 불편, 교육 시설 및 교재 부족이었다. 요구 사항으로는 바우처를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자는 것과 장애인들의 직업지도, 취업지도를 강화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능력을 길러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요구이다. 나라에서 장애의 종류별로 교육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 시책을 넓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의 근무자들이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큰 어려움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생활시설의 운영과 재정적인 부족의 문제는 언제나 어려움을 갖게 되는 문제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천 가능한 방안들과 노력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지도와 취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지향하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비장애인들도 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장애인들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당한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다양하게 만들고, 재활시설에 직업훈련을 강화와 근로시설을 양성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 간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을 기업에서 벌금으로 해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단기간에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장애인들도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 사회, 문화,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존중 받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속한 말이 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성종 (1999). 재택·순회교육 운영방안의 효율화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교육부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부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구옥종 (2005).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원옥 (2004).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교육지원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수, 김동기, 신희정, 전수빈, 유선아 (2015).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대전: 대전복지재단.

김기혁 (2002).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경 (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 (2001). 장애를 주제로 한 영역별 교재활용이 장애유아에 대한 일반유아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호, 한태윤 (1997). 척추손상 환자의 만성위장 장애 및 배변장애에 관한 연구.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21**(3), pp. 479-486.

김통원 (1998). 사회복지 수용시설 평가제의 도입과 대비전략. **한국사회 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23-144.

남철민 (2005).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형주 (2008). 정신지체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원방안.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동 (2003). 정신지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에 따른 시설서비스 지원 방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족중심지원계획(IFSP)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현정 (1992). 장애인 수용시설의 생활교육 실태 분석.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은희(1999), 통합 유치원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도구의 효용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5**(1), 43-55.

보건복지부 (2000). **2000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a). **2016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현황/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b).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서혜숙 (2000). 장애인생활시설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미령(2001), 시각장애학교 중복장애유아 교육 실태조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종화 (2003). 정신지체 장애인생활시설의 학령기 장애아동 교육실태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성순 (2012).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원일 (2002).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교육적 접근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 실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덕순 (1997), 시각장애 학교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현황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13**(1), 76-102.

이영순 (2017).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사례옹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경로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령 (2011). 지적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의 성장기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철 (2001),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논문.

이창원 (2016). 지적장애인의 초급정보화 교육의 효과성 분석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얼 (2012).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과 지원요구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정훈 (2002). 장애아동 부모의 조기 교육비에 대한 의식조사: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2003.5.1).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

전명호 (2001).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 주간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흥식(1998),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 **재활복지, 2**(2), 106-129

최영희 (2015). 거주시설 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16). 한눈에 보는 2016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생활시설의 교육활동 실태 및 요구 조사」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광주, 전라남도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생활시설의 교육활동 실태 및 요구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 대상자**란?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 본 설문지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초중고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오니 시설에서 지적장애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귀 시설의 지적장애 대상자의 현황에 관한 조사 시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소영 드림

Ⅰ. 기초사항

1. 성　　별: ____① 남　　____② 여

2. 연　　령: ____① 30세 미만　____② 30세~40세 미만　____③ 40세~50세 미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_④ 50세 이상

3. 근무경력: ____① 5년 미만 ____② 5-10년 미만 ____③ 10년 이상

4. 직위: ____① 시설장 ____ ② 사무국장(사무원) ____③ 사회복지사
____④ 생활재활교사 _____⑤ 교육담당교사(특수교사 등) _____⑥ 치료지원담당자
(작업, 음악, 심리, 언어치료사 등) _____⑦ 기타( )

5. 귀 시설의 경영주체는?
____① 사회복지법인 ____② 재단법인 ____③ 개인 ____④ 종교단체

6. 귀 시설의 지역: ____① 광주 ____② 전남

7. 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① 정원 (명) / ____②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적장애인(명)

Ⅱ. 교육지원 현황

1. 귀 시설의 학령기 지적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하세요)
____① 특수학교 ____② 시설 내 특수학급
____③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____④ 일반학교
____⑤ 시설 내 자체 프로그램 ____⑥ 재택 순회교육

2. 귀 시설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까?
____① 있다(3번 문항으로 가세요) ____② 없다(4번 문항으로 가세요)

3.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고 있지 않는 지적장애아동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당란에 모두 ∨하세요)

____① 중증 장애로 인하여(장애정도가 심하여) ____② 교육 프로그램 미비

____③ 시설의 지원인력 부족 ____④ 교육 예산 부족

____⑤ 시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____⑥ 기타( )

4. 귀 시설은 시설 내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_① 있다 ____② 없다(15번 문항으로 가세요)

5. 귀 시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____① 근무자의 교육적 중요성 인식에 의해서

____② 장애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____③ 시설사업에 대한 이해도모를 위해서

____④ 장애아동들의 사회통합(사회적응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____⑤ 기타 ( )

6. 귀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____① 시설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____② 타 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____③ 강사 섭외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운영

____④ 시설과 외부기관이 연계하여 운영

____⑤ 기타 ( )

7. 귀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무엇입니까?

____① 교과활동 ____② 일상생활훈련 ____③ 치료활동

____④ 직업교육 ____⑤ 사회적응훈련 ____⑥ 여가, 취미, 오락

8. 귀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자체 운영, 외부 연계 운영 모두 포함)은 평균 주 몇 회 운영하십니까?

____① 1회 ____② 2회 ____③ 3회 ____④ 4회 이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9. 귀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은 1회기당 평균 몇 분 운영합니까?

____① 30분미만 ____② 30~60분이내 ____③ 60~90분이내 ____④ 120분(2시간) 이상

10. 귀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방식은 어떠합니까?

____① 1:1의 개별지도 형태 ____② 5명 미만의 소그룹 형태

____③ 10명 미만의 그룹 형태 ____④ 10명 이상의 그룹 형태

11. 귀 시설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주된 평가방법은 무엇입니까?

____① 외부강사의 전문성 평가 ____② 참여자 만족도 조사

____③ 기관 내 실무자 평가 ____④ 평가하지 않음

____⑤ 기타 ( )

12. 귀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____① 참여 장애인의 부담

____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____③ 생활시설의 부담

____④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실시 기관 공동부담

____⑤ 장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공동부담

____⑥ 기타( )

13.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장애아동 1인당 매월 지출하는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____① 없음(무료) ____② 10만원 미만 ____③ 10~20만원 미만

____④ 20~30만원 미만 ____⑤ 30만원 이상 ____⑥ 기타 ( )

14. 교육 프로그램 이용비용에 대해 국가의 지원은 어떤 형태입니까?

____① 개인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

____② 교육 시설의 운영비로 지원

____③ 바우처 형태의 지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④ 공모 프로포절 사업

____⑤ 기타 ( )

15. 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교육 담당자가 있습니까?

____① 있다(16번 문항으로 가세요) _____② 없다(17번 문항으로 가세요)

16(위 15번 문항에서 ①을 답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 인정 자격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하세요.)

____① 일반교사 ____② 특수교사 ___③ 치료사

____④ 사회복지사 ____⑤ 자격증 없음 ___⑥ 기타 ( )

Ⅲ. 교육 지원정도

※귀 시설의 교육과 관련된 지원정도는 어떠합니까?

		내용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인식	17	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중요하다					
	18	우리 시설은 장애인들의 교육지원에 관한 관심정도가 높다.					
여건	19	시설 내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					
	20	시설 내 교육지원 인력이 충분하다.					
	21	시설 내 교육지원 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하다.					
	22	시설 내 교육지원 기자재가 충분하다.					
	23	시설 내 교육지원 재정(운영비)이 적절하다.					
프로그램 지원정도	24	시설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25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26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적절하다.					
	27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과의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다.					
	28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Ⅳ. 교육지원의 어려움과 요구

29. 귀 시설에서 지적장애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① 지적장애 대상자의 교육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____②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부재
____③ 부모나 친척들의 교육비에 대한 큰 부담감
____④ 국가·지방자치체 차원의 지원체제 미비
____⑤ 기타 ( )

30. 귀 시설에서 지적장애 대상자들의 교육지원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____① 통학 및 이동의 불편 ____② 교사의 부족
____③ 시설장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____④ 교육 재정(운영비) 부족
____⑤ 교육 시설 및 교재 부족 ____⑥ 기타 ( )

31. 귀 시설의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강조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① 교과활동 _____② 일상생활훈련 _____③ 치료활동

____④ 직업교육 ____⑤ 사회적응훈련 ____⑥ 여가, 취미, 오락

32. 귀 시설의 지적장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지적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____② 다른 장애유형과 함께 하는 교육
____③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육
____④ 부모(보호자 및 가족)와 함께하는 교육
____⑤ 기타 ( )

33.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프로그램관련 장애아동들의 욕구파악
____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확한 평가
____③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____④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____⑤ 장애인들의 참여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⑥ 전문 인력 확충
____⑦ 기타 ( )

34. 지적장애 대상자들이 귀 시설 외에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_① 지자체별 평생교육원 및 주민 센터
____②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____③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
____④ 직업재활시설(보호 작업장, 근로복지관)
____⑤ 종교단체 및 기타 ( )

35. 지적장애 대상들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____①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세 미만 바우처 제도를 성인기까지 확대 운영
____②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의무화(시군구 평생교육원,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등)
____③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____④ 정부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망 구축(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____⑤ 교육담당 전문 인력 확보
____⑥ 교육지원 예산 확보
____⑦ 기타 ( )

36.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비 이외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취업지도
____② 치료 및 개인상담 지원
____③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____④ 교육장소 이동을 위한 교통 지원(장애인 콜택시 등)
____⑤ 근무자들의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교육 전문연수 지원
____⑥ 기타 ( )

37. 앞으로 시설 내 지적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귀하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Collection @ chosun